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난지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(장기-1차)〕

□ **점검일시 : 2022.01.18 (화)**

□ **점검결과**

◆ **점검자 : 정진혁**

<table>
<tr>
<td>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작업장 내 근로자가 장비에 근접하여 통행해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호수를 배치해야하나 장비작업 반경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가설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임시시설을 활용하여 가설통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요망(1)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00조(접촉방지)</td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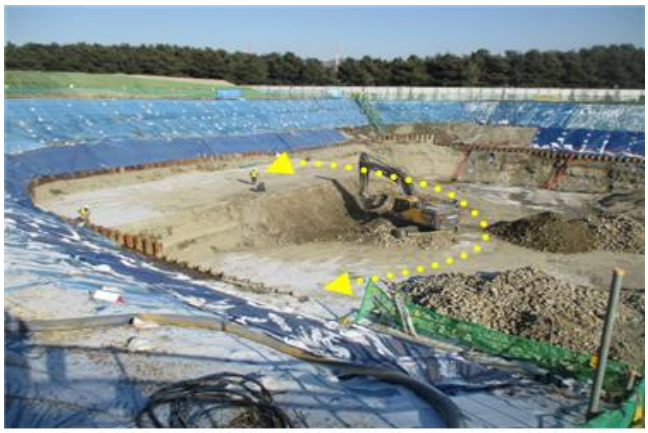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tr>
<td rowspan="2">○ 사면 안전(방재시설부)

-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상부사면 중 일부 동절기 보양이 안 된 개소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조속히 조치 요망(2)
- 공사용 가설도로 인근 하부사면 상부에 자재 야적장을 운영 중이고 안전난간이 사면단부에 근접 설치되어 계산되지 않은 상부하중과 안전난간 지주시공으로 인한 표층파괴면의 형성이 우려되므로(2-1)
- 사면단부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안전난간을 재설치 하고, 기존 지주 홀은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메우고, 자재는 사면 인근에서 하중을 줄이고 배면 안쪽으로 하중을 높이는 구조로 야적 관리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,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</td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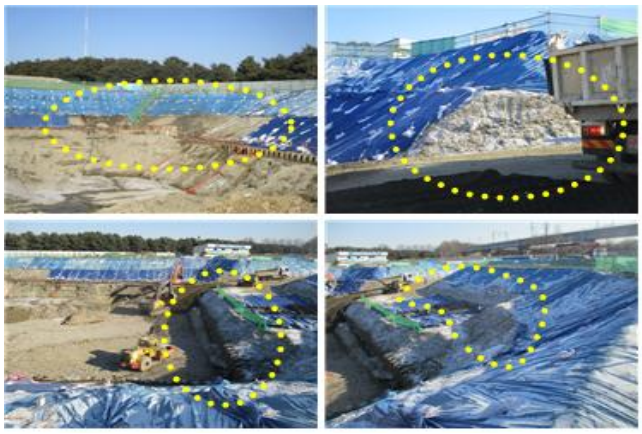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tr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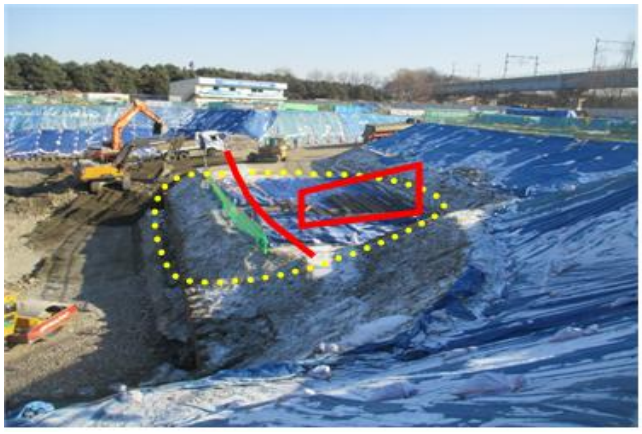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/table>

○ 사면 안전(방재시설부)

- 사면 억지공법으로 시공된 시트파일 배면에 사면 유출수가 배수지연으로 인한 물고임이 발생되어 하부지반을 연약하게 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배수경사 유지 요망(3)
 - 자재 야적장 인근 사면 보양처리 전에 낙석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석 정리 요망(3-1)
 - 자재 야적장 인근 사면에 국부적으로 함몰이 발생된 개소가 있으므로 보양처리 시 주의하고 해당 구간 시트파일의 변형여부를 주의 관찰 요망(3-2)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, 제339조(토석붕괴 위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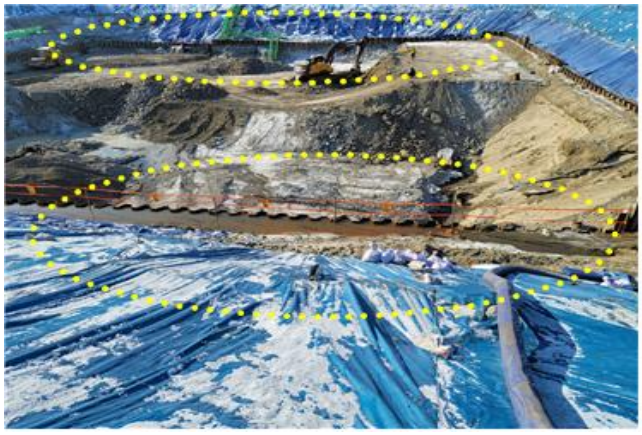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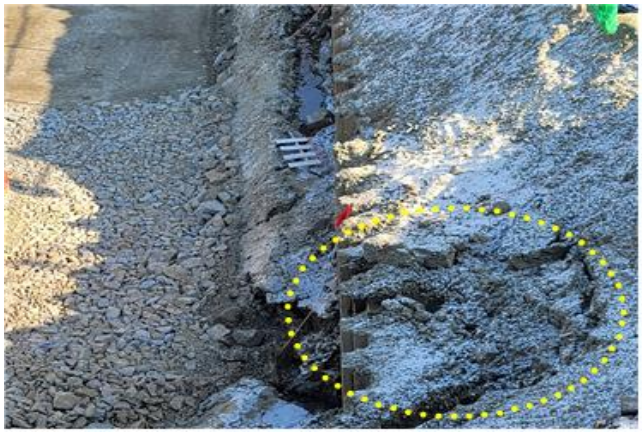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양수기 제어 분전반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처리 요망(4)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신호수는 본인의 위험상황 알림 및 건설장비 통제를 위해 호각, 확성기, 무전기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건설장비 간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신호방법을 건설장비 운전자, 신호수 교육 요망(5)
 - 궤도로 움직이는 굴착기, 도져 등의 건설장비는 궤도장력이 느슨해질 경우 험지에서 궤도가 이탈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궤도가 쳐지지 않도록 관리 요망(5-1)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(전도 등의 방지), 제203조(안전도 등의 준수)

○ [모범사례]기계기구 안전(방재시설부)

- 철근가공 작업장에 관련된 지침, 법령, 위험성 평가, 안전수칙 등을 고시한 모범사례

○ [모범사례]안전보건경영체계(방재시설부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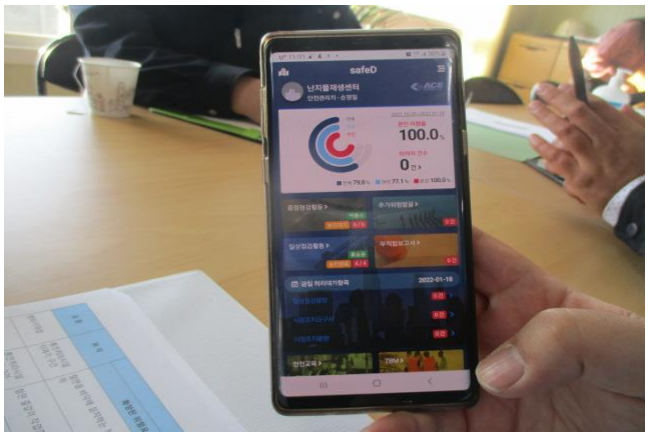
- 해당 공종의 위험성 평가 이행여부를 작업지휘자가 확인하여 통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사용